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 석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건학부 졸업평가 지침 개정(안)

-
1. 관련: 학칙제45조(졸업평가) 및 교무규정 제102조(졸업평가)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학부 졸업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가. 개정사유: 물리치료학과의 졸업 평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시행일: 2021. 3. 1

- 붙임 1. 보건학부 졸업평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보건학부 졸업평가 지침 1부. 끝.

기안자 한혜진 물리치료학과주임교수
협조자

황수진 보건학부장 김혜진

교무처장

시행 보건학부 -1778(2021.2.26.) 접수

우 330-704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1 / <http://www.bu.ac.kr>

전화 041-550-2994 전송 041-550-2829

/hyejin@bu.ac.kr

공개여부 (공개)

보건학부 졸업평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졸업시험 응시자격) <u>편입생의 졸업시험 응시는 전공별 지침에 따른다.</u>	제4조(졸업시험 응시자격) <u>편입생은 동일계열은 편입 후 4학기 이상 등록 시, 비동일계열은 편입 후 5학기 이상 등록자 중 전공 및 교양 과목을 모두 이수(예정)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u>
제6조(졸업시험출제) ④ <신설>	제6조(졸업시험출제) ④ <u>물리치료학과 실기 시험은 60점미만을 과락으로 한다.</u>
제9조(합격자 유효기간) 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는 졸업예정학기를 제외한 1년(총 2개학기)간 유효한 자격을 가진다. ② 위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다시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9조(합격자 유효기간) <삭제>
제10조(졸업논문 제출자격) 4. <신설>	제10조(졸업논문 제출자격) 4. <u>물리치료학과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6학기까지 평균평점 3.8이상이며, 대상자가 정할 수 있다.</u>
제12조(지도교수 선정) 제출된 졸업논문계획서에 의하여 완성된 졸업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4월(후기졸업) 또는 10월(전기졸업)까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교수 선정) <삭제>
제15조 (졸업논문 심사)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u>판정하며, 경우에 따라 졸업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부의할 수도 있다.</u> ② 현행유지	제15조 (졸업논문 심사)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u>판정한다.</u> ② 현행유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구성) ① 학부 졸업시험의 시행·관리 등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u>심의·의결하기 위하여</u> 본 학부에 졸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부장, 전공 주임교수와 각 전공교수 1~2인 등 도합 <u>4인~9인으로</u>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학부장으로 보한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1. ~ 5. 현행유지 ② 적정 시기에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학부장 또는 각 전공 주임교수가 전항의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u><신설></u>	제16조(구성) ① 학부 졸업시험의 시행·관리 등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u>심의하기 위하여</u> 본 학부에 졸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부장, 전공 주임교수와 각 전공교수 1~2인 등 도합 <u>6인~9인으로</u>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학부장으로 보한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심의한다.</u> 1. ~ 5. 현행유지 ② <u><삭제></u> 부 칙 <u>이 지침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보건학부 졸업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백석대학교 학칙 제45조(졸업평가) 및 교무규정 제102조(졸업평가)에 의거하여 보건학부(이하 “본 학부” 라 한다)의 졸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대학 보건학부를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졸업평가) ① 본 학부의 졸업평가는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으로 한다.

②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장 졸업시험

제4조(졸업시험 응시자격) 졸업시험 응시대상자는 7학기를 이수한 8학기 이상 등록자 중 전공별로 개설한 현장실습 과목을 모두 이수(예정)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 예정자는 6학기를 이수한 7학기 등록자 중 학과별로 개설한 현장실습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생은 동일계열은 편입후 4학기 이상 등록시, 비동일계열은 편입후 5학기 이상 등록자 중 전공 및 교양 과목을 모두 이수(예정)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졸업시험과목) 졸업시험 과목은 각 전공별 교수들의 협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해당 시행학기에 결정 공고한다.

제6조(졸업시험출제) ① 출제위원은 매 과목별로 학부장 및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②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한다.

③ 매 과목별 40점미만을 과락으로 하며,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전공을 불합격으로 한다.

④ 물리치료학과 실기시험은 60점미만을 과락으로 한다.

제7조(졸업시험시행) ① 전공별 전 과목을 블록시간제로 시행할 수 있으며, 블록시간 중간에 퇴실한 자는 해당 시간에 다시 입실할 수 없다.

②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하지 못한 자는 사전 또는 시험 직후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결시사유서<별지서식 제1호>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재시험은 본시험 과락자 및 결시사유가 승인된 미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구술평가 등으로 졸업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졸업시험시기) ① 졸업시험은 5월(후기졸업) 및 10월(전기 졸업)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시험 응시대상자가 있을 경우 6월(후기 졸업) 또는 11월(전기 졸업)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시험의 출제 및 시행은 본 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졸업시험에 관한 시행일시와 구체적인 시험시행 절차 및 방법은 해당 시행학기에 결정하여 시행일 20일 전에 학부사무실 앞 게시판, 학부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9조 삭제

제3장 졸업논문

제10조(졸업논문 제출자격) ① 졸업논문 제출대상자는 6학기를 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대상자는 졸업논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의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시기는 졸업 직전 학기 10월(후기졸업) 또는 5월(전기졸업)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논문 작성 방법, 규격, 양식 등은 본 학부에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3. 졸업논문의 조는 4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물리치료학과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6학기까지 평균평점 3.8 이상이며, 대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졸업논문 제출시기) 완성된 졸업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4월(후기 졸업) 또는 10월(전기졸업)까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지도교수 선정) 제출된 졸업논문계획서에 의하여 주임교수는 전임교수 중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졸업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주임교수는 2인 이상의 졸업논문 심사위원을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졸업논문 심사)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한다.

②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제4장 학부 졸업평가위원회

- 제16조(구성) ① 학부 졸업시험의 시행·관리 등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부에 졸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부장, 전공 주임교수와 각 전공교수 1~2인 등 도합 6인~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학부장으로 보한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졸업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에 관한 사항
2. 졸업시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졸업시험 합격 사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졸업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삭제

제18조(소집) ① 졸업시험 시행학기에 위원장 및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재의에 붙일 수 있다.

제5장 규정개정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지침은 본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보건학부 졸업평가 내규]는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보건학부 졸업평가 내규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